

【논문】

入關 前 淸의 법과 도리, 그리고 朝鮮\*

정병진\*\*

차례

- I. 머리말
- II. 누르하치의 도리
- III. 홍타이지의 법과 한인 관료
- IV. 법과 도리의 확장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7세기 초·중반 여진의 군주인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법과 도리를 통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시킨 모습에 주목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인 관료의 역할이 지닌 의미와 이웃 국가인 조선의 사례를 통해 후금의 법과 도리가 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모습도 살펴보았다.

누르하치는 분열된 여진을 통합하고 엄격한 법의 집행을 시도했다. 그의 법을 어긴 자들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 처벌받았고, 법으로 복속시키지 못한 자들은 부자 관계의 도리를 요구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홍타이지도 즉위한 이후 자신의 경쟁자를 법이라는 수단을 빌려 제압했다. 그의 법은 정치적 맞수의 제거만이 아닌 국가의 안정을 위한 조치로도 활용되었다. 후금을 위해 근무하는 한인 관료는 명의 사법 시스템을 추천했고 홍타이지의 선택에 따라 법은 보다 엄격하게 정비되었다.

후금 내부에 적용되었던 법과 도리는 점차 확산되기 시작해 조선과의 경계를 넘었다. 후금과 조선은 서신의 교환을 통해 양국의 도리를 논하기 시

\* 이 논문은 2018년도 5월 19일 만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강원대 사학과.

작했으나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양국의 관계는 전쟁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 위치가 결정되었으며, 후금의 한인 관료는 새로운 질서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법, 도리, 누르하치, 홍타이지, 한인 관료, 조청관계

## I. 머리말

17세기 건주여진의 지도자인 누르하치는 분열된 여진을 통합하고 명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기존 질서에 반발한 여진인의 도전은 대를 이어 지속되었고, 그들의 우연한 성공은 동아시아의 수많은 변화를 유발했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입관 전 여진을 이끈 두 군주는 지속되는 전쟁과 외교를 통해 새로운 영토와 백성을 얻었고 그들에 대한 지배권을 구축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활용된 도구 중 하나가 법이다.<sup>1)</sup> 법과 권력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력은 법을 기반으로 기능하고, 법은 누가 권력을 행사할 것 인지를 규정한다.<sup>2)</sup>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도 이런 성격을 이용해 군주로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려 노력했다.

과거 여진의 관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법과 제도는 시간이 지나며 한인의 법과 융합되어 각종 기능을 담당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법으로 해결될 수는 없었다. 군사적 성공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강압적인 지배와 팔기 내부의 권력투쟁 등은 여진의 지도자에게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그들이 선택한 또 다른 방책 중 하나가 道理이다.

1) 허신의 『說文解字』에는 法의 고어인 灋에 대해 ‘법은 물처럼 공평해야 하므로 灋을 쓰며, 鷹은 이치에 어긋나는 자를 보면 뿔로 공격해 쫓아버리기에 去를 따르게 했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법의 의미는 刑이었다는 것과 공평한 刑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징벌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 동아시아 사회에서 法의 의미에 대해 앞서 설명한 刑과 함께 法制의 의미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法이란 글자가 가진 의미 및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會憲義·馬小紅 주필, 채복숙·전영매 외 역, 2015, 『예와 법』, 경지출판사, 355~358쪽.

2) 오세혁, 2013, 『법의 한계』, 세창출판사, 12~13쪽.

힘에 의한 강제적 규범이 아닌 도덕 의무를 준수하라는 요구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여진의 지도자가 원한 법과 도리를 모두 충족시킨 한인 관료는 그 대표적인 존재이다. 명의 신민으로 태어나 후금에서 목숨을 이어간 자들은 자신의 재능을 바치며 살아남았다. 그들의 노력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후금의 한에 의해 선택받았고, 새로운 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선전물로 이용되기도 했다.

누르하치의 거병 이후 끊임없이 변화한 후금 사회의 모습을 법을 통해 들여다보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청대 법률의 근원에 대한 모색 및 입관 전 시기별로 제정된 개별적인 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sup>3)</sup>, 다른 민족에 대한 입법의 종류와 의미<sup>4)</sup>, 사법 기구와 특정 사료를 바탕으로 법률 제도에 대한 분석<sup>5)</sup>, 중국식 법률의 수용과정과 한인 관료의 역할 등에 관한 탐구가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었다.<sup>6)</sup> 더불어 시기별 중국의 법제를 고증하면서 일본의 주요 연구 성과도 대거 제시한 총서와 통사적인 시각으로 중국의 법을 다룬 연구<sup>7)</sup>, 유라시아 지역 북방민족의 습관법과 법체계에 대한 규명도 당시의 모습을 살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sup>8)</sup>

- 
- 3) 曲岩, 2004, 『后金政權創建法律的政治作用探析』, 9; 張妍·張橙, 2004, 『清代法律制度』, 『學理論』 15; 劉偉星, 2007, 『八旗制度的歷史价值』, 『山西青年』 21; 武航宇, 2011, 『努爾哈赤時期的民事法律制度考析』, 『瀋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35; 劉金生, 2012, 『清入關前法律形式窺探』, 『法制與社會』 31; 武航宇, 2013, 『努爾哈赤法律思想考析』, 『瀋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37; 何云云, 2016, 『清太祖朝“竊盜罪”探析』, 『渤海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8.
- 4) 楊強, 2006, 『從法律的視角看后金征服漢南蒙古』 32; 王祖書, 2008, 『論后金綏服漢南蒙古的法律措施』, 31; 이선애, 2016, 『청대 몽골법 제정과 적용 양상』, 『명청사연구』 46, 명청사학회; 이선애, 2018, 『후금 시기 의례의 정치』, 『사총』 93,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5) 滋賀秀三, 1993, 『中國法制史』, 東京大學出版會; 王吉英, 2014, 『淺析清太宗時期禮部的職能与作用』, 『中國校外教育(中旬刊)』 21.
- 6) 武航宇, 2008, 『后金習慣法中的野蛮与文明』, 『沈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32; 柳岳武, 2008, 『清朝司法的域外形象研究』, 『天府新論』 1; 劉金生, 2013, 『清入關前漢人為官制度探究』, 『法制與經濟(下旬刊)』 1; 王洋, 2017, 『參漢酌金熔鑄滿漢』, 『呼倫貝爾學院學報』 25.
- 7) Bodde, Derk, 1967, 『Law in imperial China』, Harvard University; 楊一凡 總主編, 2003, 『中國法制史考證』,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장진번 주편, 한기중·김선주 외 옮김, 2006, 『중국법제사』, 소나무.
- 8) 라자노프스키 VA 지음, 오강원 역, 1994, 『시베리아 유목부족의 관습법』, 서경문화사; 島田正郎, 1995, 『北方ユラシア法系通史』, 創文社.

따라서 이 글에서도 선행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활용한 법과 도리가 가진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시기적으로 주로 天命과 天聰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두 시기에 걸쳐 정립된 후금의 법과 도리가 외부로 확장되는 모습을 이웃 국가인 조선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힘의 변화가 미친 한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누르하치의 도리

누르하치는 여진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했다. 후금은 여진의 관습을 바탕으로 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갔으며 점차 늘어가는 그들의 협력자와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했다. 새로운 국가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법이었다. 만주어로 작성된 역사서는 법을 *fafun*, *šajin*, *fafun šajin*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정해진 규율과 군주의 명령을 어긴 경우 등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清太祖實錄』을 비롯한 다양한 사료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누르하치는 집권 초기부터 법을 제도로 정하기 시작했다.<sup>9)</sup> 그의 수많은 성공담을 기록한 역사서도 그의 권능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로 엄격한 법의 집행을 열거한다. 입관에 성공한 누르하치의 후손은 자신의 선조를 찬양하면서 법을 바르게 세운 공적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sup>10)</sup>

실제 누르하치는 법의 제정과 집행을 통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1587년에는 엄격한 의미의 사법이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하면

9) 『清太祖實錄』 卷2, 丁亥年 6月 24日(임오); 본 글에서 사용하는 『清實錄』과 『朝鮮王朝實錄』은 모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의 원문 및 이미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1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역주회, 2014, 『만주실록 역주』, 소명출판, 454~455쪽.

누르하치는 직접 군대의 형벌로 처벌했다.<sup>11)</sup> 그러나 『淸史稿』 刑法志에는 누르하치의 시기에 대해 ‘도의에 어긋나는 일을 금지하고, 도적을 단속해 법률과 제도를 세웠다’라고 평가하고 있다.<sup>12)</sup> 또 청대의 『皇朝通典』이나 『皇朝文獻通考』에도 송사를 다루는 글이 누르하치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을 걱정해 문 밖의 두 나무에 고발하는 말을 적어두라는 등 그의 재위기간에 정해진 법령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sup>13)</sup>

이외에도 1595년 건주여진에 대한 탐문 보고서를 작성한 조선의 申忠一은 『건주기정도기』에서 刑杖을 사용하지 않고 옷옷을 벗긴 죄인의 등에 鳴鑼箭을 쏘거나 뺨을 때리는 처벌을 언급한다.<sup>14)</sup> 1613년에는 누르하치가 버일러와 암반을 향해 나라를 다스리는 엄격한 법도를 강조하고 이를 훼손하는 사람을 귀신이라 표현하는 모습을 『舊滿洲檔』과 『滿洲實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또한 1619년 사르후 전투 이후 후금의 포로가 된 李民寔이 조선에 귀환해 작성한 『建州聞見錄』에서 전투에 임하는 여진인의 태도를 매개로 법이 적용되는 모습을 전한다. 그에 따르면 여진인은 겁을 먹고 후퇴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데, 죄를 지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별로 군사를 빼앗거나 처첩, 노비, 가산을 몰수하며 화살로 귀를 뚫어버리기도 한다고 증언했다.<sup>16)</sup>

동시에 누르하치에게 처벌받은 사람도 기록되었다. 버일러와 암반 등, 다양한 지위와 종족을 배경으로 가진 자들이 새로 정해진 법에 의해 처벌받았다. ‘입에 천천을 머금었다’고 표현될 정도로 누르하치가 내린 법령은 제일 중요한 형식이 되었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구속력을 갖추게 되었다.<sup>17)</sup>

11) 장진번 주편, 한기중·김선주 외 옮김, 2006, 『중국법제사』, 소나무, 732쪽.

12) 『淸史稿』 卷142, 志117, 刑法 一.

13) 『皇朝文獻通考』 卷195, 刑一; 『皇朝通典』 卷80, 刑一.

14) 신충일 원저, 신해진 역주, 2017, 『건주기정도기』, 보고서, 44쪽.

15) 최동권, 2007, 『구만주당』, 보고서, 51~52쪽;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연구회, 2014, 위의 책, 173쪽.

16) 이민환 지음, 중세사료강독회 옮김, 2014, 『책중일록』, 서해문집, 128~129쪽.

17) 장진번 주편, 2006, 위의 책, 505쪽.

다만 이들이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다. 鞭刑을 예로 들면 니루의 일반 사병에게 처벌이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팔기의 고위관료는 관직을 빼앗기거나 贖銀을 통해 매질을 면제받았다. 혹 鞭刑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먼저 그들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이후 책임을 물었다.<sup>18)</sup>

하지만 법을 통한 규제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여진의 통일은 무력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었다. 전쟁에 패배한 세력은 누르하치의 수하로 편입되었고, 이들은 다시 전쟁과 노역에 동원되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신충일은 여진인이 누르하치를 향해 반드시 마음속으로 원망할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sup>19)</sup>

누르하치가 법과 함께 선택한 것은 ‘道理’였다. 만주어 역사서에는 군사, 정치, 법령 등을 언급한 구절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가 ‘doro’이다. 용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의미는 대략 道理, 方法, 禮節, 儀禮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sup>20)</sup> 그 중에서 도리,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 할 바른 길’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후금 사회의 최고 지도자인 한이 아버지의 역할도 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사료 1]

수려 कु들린 한이 그의 자식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좋고 정직한 사람을 추천하지 않고 승직시키지 않는다면 좋고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번영하겠느냐? 나쁜 사람을 강등시키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면 나쁜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하겠느냐? 연음을 욕심내지 말라. 정직을 욕심내라. 재물을 생각하지 말라. 덕을 생각해라. 하늘의 아래에서 살아갈 큰 나라의 도리는 정직과 덕보다 위에 무엇이 있겠느냐? 나의 마음은 본래 정직을 (행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다. 자식들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말한 것 이것이다.<sup>21)</sup>

18) 蘇亦工 主編, 2003, 『民族法制考』, 『中國法制史考證』 甲編第七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90쪽.

19) 신충일 원저, 2017, 위의 책, 111쪽.

20) 이훈 편저, 2017, 『滿韓辭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5~206쪽 참조.

21) 滿文老檔研究會譯註, 1955, 『滿文老檔』 I, 東洋文庫, 60쪽.

[사료 1]은 누르하치가 자식들에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도리를 강조한 장면이다. 전체 사료의 맥락을 살펴보면 각 분야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찾아 등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누르하치의 자식만이 아닌 버일러와 암반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런 모습은 후금 사회의 근본인 팔기의 기주가 아민을 제외하고 모두 누르하치의 자제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가정 공동체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분열되었던 여진 세력은 팔기의 아래로 편입되었고, 누르하치는 모두의 군주이자 아버지의 자격으로 이들을 통솔하기 시작했다.<sup>22)</sup>

『滿文老檔』에서 반복된 ‘아버지 한[ama han]’이란 표현은 누르하치의 위상이 단순한 정치 지도자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특히 누르하치의 인척이면서 복종과 저항을 반복한 부잔타이의 지속적인 발언은 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는 1587년 12월 올라국의 주인이 된 이후 누르하치를 “두 차례 살려준 아버지”라고 말했으며, 1608년 누르하치의 군대가 올라의 이한이라는 산성을 점령하자 대신을 파견해 “한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1612년 부잔타이가 누르하치를 배신하자 9월과 10월에 양국의 군대가 대치하는 가운데 다시 “아버지 한”에게 자비를 베풀어줄 것을 청했다. 그럼에도 누르하치의 질책이 계속 이어지자 다시 “우리 부자”라는 표현을 통해 군사가 대치한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거두지 않고 있다.

누르하치가 여진 사회에 원했던 도리는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속이었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자는 누르하치의 법령을 넘어 天命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다만 이를 보다 아름다운 명분으로 포장하기 위해 부자 관계의 형식을 빌린 것이며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따라서 그가 한이자 아버지로서 알려준 국가를 위한 도리는 모범이 되어야 할 자신의 행실과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22) 韓世明, 2006, 『明代女真家族形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78쪽.

## [사료 2]

“…… 天父, 地母에 제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그들 중에 비록 나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쁜 사람을 손대어 죽여 전례를 만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을 하늘이 죽이십시오. 하늘의 죽임을 기다리지 않고 손을 대어 죽이자고 생각하는 나쁜 마음의 사람이라면, 하늘 당신이 모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쁜 마음의 사람을 하늘과 땅 당신들이 먼저 알고, 그 나쁜 사람을 수명에 이르지 못하고 요절하게 하십시오. 형제 가운데 악하게 어지럽히는 죄를 지은 사람을 알고서 죽이자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 도리를 따르고 좋은 마음을 갖고 나쁘고 어리석은 사람을 깨닫도록 가르쳐 말하여 살면, 天父 地母가 도와서 어여뻐여겨 기르고, 여러 신령 당신들이 모두 아끼어 나의 자손을 백대 만년에 이르도록 영원히 살기를 바라니 하늘과 땅이 빌며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이산·아민·망골타이·홍타이지·더걸러이·지르갈랑·아지거·요토가 정월 12일에 맹세했습니다. 맹세한 날로부터 앞의 죄를 계산에 넣지 말고 맹세한 날로부터 뒤의 죄를 계산에 넣으십시오.”라고 하늘과 땅에 빌며 바랬다.<sup>23)</sup>

이 기사는 1621년 정월 누르하치가 팔기의 버일러를 이끌고 분향한 내용의 일부이다.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자손이 서로 믿고 번영하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 하늘이 벌해주기를 원하는 지극히 평범한 소원을 빌면서 버일러들의 맹세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과거 행적과 모순된 바램이었다. 동생인 슈르하치가 형과 동등한 권력을 탐하자 그는 제거되었으며, 자신을 대신해 執政까지 맡겼던 장남 추영도 누르하치를 뒷받침하던 소위 五大臣 및 4명의 대버일러와 불화를 일으키자 결국 죽임을 당했다. 기록에서는 둘의 죽음을 누르하치의 안타까운 결단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동생 및 아들과의 권력 투쟁이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후금이 건국되기도 이전 혈육까지 죽인 권력독점을 위한 누르하치의 행동은 한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가 강조한 법과 도리는 대권을 보

2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역주회, 2014, 위의 책, 324~325쪽.

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한으로서 계속된 전쟁의 성공과 이에 따른 재물의 적절한 분배는 다른 요구를 잠식시킬 수 있었다. 다만 이런 모습은 군주로서 요구되는 자비로운 이미지를 훼손하고 대외적으로 살인을 좋아한다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후 누르하치는 1626년 사망할 때까지 후계를 지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팔기의 버일러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협의하는 방식을 자신의 사후 정치체제로 추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료 3]

3월 초 3일에, 여덟 호쇼이 버일러들이 태조 경기연 한에게 “하늘이 주신 도리를 어떻게 정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이 영구하게 됩니까?”라고 물으니, 경기연 한이 말하길 “아버인 나를 이어 나라에 한을 삼을 때에 강하고 사나운 사람을 한으로 삼지 마라. 강하고 사나운 자가 한이 되면 그가 힘을 중하게 여기며 살아 하늘에 죄를 지을까 염려된다. 한 사람이 비록 식견이 있다 해도 무리의 의논에 미치겠는가? 여덟 아들들 너희는 여덟 호쇼이 버일러가 되어라. 여덟 호쇼이 버일러가 한 뜻으로 살아간다면 실책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호쇼이 버일러들 너희는 말을 따르라. 선함을 보고 나의 뒤를 이어 나라에 한으로 삼으라. 너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한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한을 바꾸어 좋은 자를 골라 나라에 한으로 삼으라. 그 바꿀 때에 기뻐하고 웃으며 논의대로 처리하여 바뀌려 하지 않고 거부하며 낯빛이 변하면 그 나쁜 사람의 뜻대로 하겠느냐? 여덟 호쇼이 버일러들 너희는 나라의 정치를 다스릴 때에, 한 버일러가 마음에 깨달아서 나라에 이로운 좋은 말을 말하면 다시 일곱 버일러들이 결론을 내어라.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깨달은 좋은 뜻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쓸모없이 침묵한다면 그 버일러를 바꾸어 아래 동생·기른 아들의 재능을 봐서 버일러로 삼으라. 그 바꿀 때에 기뻐하고 웃으면서 논의대로 처리해 바뀌려 하지 않고 거부하며 낯빛이 변하면, 그 나쁜 자의 뜻대로 하겠는가? 여덟 호쇼이 버일러는 어떤 일로 가든지 무리에게 알리고 가라. 의논 없이 가지 마라. 나라의 주인 한의 곁에 모이려면 한 둘이 모이지 말고, 무리가 모두 모여 의논하여 국정을 다스리고, 일을 처리하라. 간사하고 사악한 나쁜 사람을 뒤로 물리라. 바르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을 천거하라.”고 말했다.<sup>24)</sup>

[사료 3]은 1622년 4월 버일러들이 누르하치에게 국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비법을 물은 대목이다. 누르하치가 알려준 가르침은 팔기의 버일러가 동등한 권력을 공유하고 국정을 서로 협의하는 방식이었다. 만약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균형을 깨트리고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면 그 한을 폐위하고 새로운 한을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가르침은 팔기 내부의 권력투쟁이 고려된 것이었다. 후금의 성공과 함께 팔기의 버일러는 그 세력이 점차 강대해졌으며 내부 경쟁도 격화되었다. 다른 기의 성장에 대한 견제는 물론이며 전장에서 획득하는 재화에 대한 분배에 서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누르하치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나름의 법과 도리를 통해 지배한 누르하치가 건재하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특정 인물이 후계자로 지명되는 순간 내부의 평화는 무너질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팔기의 균등한 세력 분할을 강조했고, 여러 버일러를 한 곳에 모아 자신이 흡수한 여진 세력이 패배한 이유를 욕심과 분열로 규정하며 서로 한 뜻으로 협력한 것을 당부했다.<sup>25)</sup> 이는 자신의 후사를 걱정함과 동시에 현실의 권력도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만들려는 비책이기도 했다.

누르하치는 결국 후계를 지명하지 않고 죽었다. 그의 죽음을 기록한 대목은 ‘나라의 정사를 맡아 자손들에게 미리 남긴 가르침이 있어 임종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한다.<sup>26)</sup> 그의 선택은 자신의 시대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누르하치 사후 찾아올 혼란을 잠시 뒤로 미룬 것이기도 했다.

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역주회, 2014, 위의 책, 378~380쪽.

2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역주회, 2014, 위의 책, 412~413·446~451쪽.

26) 『清太祖實錄』 권10, 天命 11년 8월 7일(병오).

### Ⅲ. 홍타이지의 법과 한인 관료

누르하치의 사망 이후 홍타이지는 후금의 한이 되었다. 한으로 즉위한 첫 날, 그는 과거 자신과 동일한 직급이었던 다이산·아민·망골타이 버일러를 신하로 대하지 못한다. 오히려 즉위식 이후에도 이들과 나란히 앉아 정사를 펼쳐야만 했다.<sup>27)</sup> 한의 주변을 둘러싼 형제이자 사촌인 버일러와 타이지는 언제라도 한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었다.

한으로 즉위한 홍타이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분열된 권력의 독점이었다. 법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누르하치 시기 법은 제도화되기 시작했지만 과거 여진 사회의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법의 규정과 처벌방식은 정해져있었지만, 그 적용은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닌 권력자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었다.

홍타이지가 즉위한 이후 그와 함께 同列에서 南面하고 앉아 정사를 펼친 다이산·아민·망골타이는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정적이었다.<sup>28)</sup> 하지만 누르하치가 남긴 가르침에 따라, 그리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우선 각 기가 월별로 당직을 서며 나라의 모든 중요한 정무를 처리하고 있었다.<sup>29)</sup> 이런 모습은 홍타이지 집권 초기 한과 다른 버일러의 권한이 사실상 동일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胡工明은 奏疏에서 ‘한과 버일러가 서로 한 사람과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며, 한은 이름만 가졌을 뿐 실제로 일개 버일러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sup>30)</sup>

가장 먼저 권력을 잃은 버일러는 아민이었다. 홍타이지는 1630년 永平에

27) 구범진, 2012,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73쪽.

28) 군주의 남면이 가지는 의미는 『周易』의 ‘성인이 남면하여 천하를 다스리되, 밝은 곳을 향해 다스린다’는 구절이나, 『韓非子』에서 ‘군주가 정사를 살필 때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남면이라 하고, 신하들이 북쪽의 군주를 향하는 것을 북면이라 한다’는 언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9) 누르하치 시기부터 시작된 팔기가 각 조를 이루어 업무를 분담하는 모습은 中國第一歷史檔案館, 『天聰五年八旗值月檔』 1~5, 『歷史檔案』의 중국어 번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 戴逸 지음, 김승일 옮김, 2017, 『한권으로 읽는 청나라역사』 상, 경지출판사, 125쪽 재인용.

서 패배하고 돌아온 아민에게 16가지 죄를 덧붙여 벌을 내렸다. 처벌의 직접적인 원인은 군사적 실패에 대한 문책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외에도 개인적 탐욕,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베푼 호의에 대한 배신 등이 주요 사유로 열거되었다.<sup>31)</sup> 홍타이지를 지지한 자들은 아민을 죽일 것을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극형 대신에 유폐시키고, 그가 가진 인구와 노예, 재산 등을 몰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아민이 지니고 있던 鑲藍旗는 지르갈랑에 주어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후 홍타이지와 같은 열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버일러는 다이산과 망굴타이었다. 1631년 9월 망굴타이가 두 번째로 제거되었다. 사건은 大陵河城을 공략하는 도중 홍타이지와 망굴타이 사이의 언쟁에서 시작되어, 한을 향해 腰刀의 칼자루를 계손 권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 거기에 이를 말리는 동생 더걸러이 타이지를 향해 욕하며 칼을 빼들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홍타이지는 분쟁이 일어난 자리를 떠나 업무를 처리한 이후 주둔한營으로 돌아와 생모를 죽였던 망굴타이의 개인사 등을 언급하며 비난했다. 그리고 망굴타이의 위협적인 행동에도 자신을 지키지 않고 머뭇거리던 시위들을 크게 질책하였다.<sup>32)</sup>

이런 모습은 한 이외의 버일러가 지닌 힘의 크기를 보여준다. 홍타이지의 시위들은 군주를 향해 칼을 잡은 망굴타이를 제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를 방관하는 모습마저 나타난 것은 망굴타이를 비롯한 버일러의 세력이 홍타이지에게 도전할 수도 있었음을 반증한다. 동시에 홍타이지의 권력도 군주로서 온전한 힘을 갖추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밤, 망굴타이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으나 홍타이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망굴타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다른 버일러와 타이지들이 모인 자리

31) 李蓮香, 1965, 『阿敏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6~90쪽;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656~679쪽;

3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위의 책, 877~882쪽.

에서 腰刀를 잡았다는 불경죄를 이유로 대버일러의 칭호를 중지시키는데 그쳤다.<sup>33)</sup> 이후 앞선 아민의 사례처럼 직접적인 벌은 가하지 못했으며, 망굴타이가 죽은 이후에야 그의 시체에 추가로 벌을 내릴 수 있었다.

다이산 역시 한으로서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존재였다. 앞서 제거된 아민과 망굴타이는 각기 슈르하치의 아들, 생모를 죽인 근원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다이산은 한의 자리를 물려받을 유력자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던 인물이었다. 그림에도 다이산은 누르하치의 사망 이후 홍타이지를 적극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1631년 12월 예부참정 李佰龍이 아민과 망굴타이가 이미 죄를 얻었기 때문에 朝會의 班制를 새로이 정할 것을 청하자, 다이산은 그 의견에 적극 동조하며 이후 홍타이지가 홀로 남면할 것을 요청하였다.<sup>34)</sup> 이는 그동안 동일한 의례를 받아온 다이산이 홍타이지가 확보한 권력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자 남아있는 자신의 세력을 보존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면의 동의라는 상징적 조치를 통해 홍타이지에 대한 복종 의사를 내보였지만 그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다이산에게 내려진 홍타이지의 벌과 질책은 그의 권한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한의 의지에 따라 통제가 가능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은 1635년 11월 다이산이 홍타이지에 복종을 맹세하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sup>35)</sup>

아민, 망굴타이, 다이산으로 이어지는 처벌과 기강의 확립은 홍타이지의 권력독점 과정을 보여준다.<sup>36)</sup> 그리고 이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법은 보다 엄격하게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후금에 투항한 한인 관료들은 그들의 주인을 위해 가장 큰 경쟁자인 명의 사법시스템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1631년에는 刑部가 설치되었으

3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위의 책, 936~937쪽.

34) 『淸太宗實錄』 권10, 天聰 5년 12월 28일(병신).

35)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1989, 『淸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上, 光明日報出版社, 222~223쪽.

36) 1626~1636년의 기간에 홍타이지의 지배체제와 버일러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송미령, 2008, 『天聰年間(1627-1636年) 支配體制的 確立科程과 朝鮮政策』, 『중국사연구』 54, 중국사학회; 王艷春, 2012, 『淸初貝勒』, 遼寧民族出版社.

며, 한인 관료 寧完我是 『大明會典』을 기반으로 후금의 사정에 맞는 규정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사료 4]

대명회전이 좋은 책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든 일을 그 책에 비추어 행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 천하가 이삼백년으로 그 강역은 동과 서로 이어져 서로 만나나 되며, 재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물며 회전이 책은 洪武로부터 지금까지 더하고 빼서 고치기를 몇 차례나 했는지 알 수 없으니, 어찌 우리가 오늘날 회전을 한 글자라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율령의 일은 성인이 아니면 정할 수 없으니, 우리가 어찌 감히 의논하겠는가?”라고 하니, 이는 변화의 이치에 크게 통달하지 못한 말입니다. 한 시대의 군신이 있으면 한 시대의 제도가 있음을 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sup>37)</sup>

주지하듯이 『대명회전』은 명나라 초기부터 사용되던 대부분의 행정법규를 모아놓은 책이다. 후금에 복속한 한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명의 신민이었던 시절 학습한 내용을 흥타이지에게 바쳤다.

영완아의 주소 역시 그 중의 하나로 후금이 명의 제도를 모방해 六部를 설치하자 이를 운영하는 방식도 명의 법을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영완아를 포함한 여러 한인들은 여진의 전통과 중국의 제도를 고려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법과 제도의 정비를 넘어 후금사회의 각 방면에서 활용되었고, 흥타이지의 권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였다. 흥타이지도 이들의 제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한인 관료를 이용했다.

흥타이지의 법은 위로만 향하지 않았다. 그가 권력을 잡은 이후 여러 법이 추가되는데 많은 부분이 사회 기층부를 향하고 있었다. 흥타이지가 한으

37) 遼寧大學歷史系, 1980, 『寧完我請變大明會典設六部通事奏』, 『天聰朝臣工奏議』, 71쪽.

로 즉위했을 때 후금은 전쟁과 재난의 연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잇달아 시행되었다.

그런 조치는 기본적으로 누르하치의 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627년 6월에는 죄를 다스리는 암반들에게 각 구사의 농작 여부를 살피게 하고, 말을 타고 사람을 해치는 도둑을 엄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후금은 銀은 많으나 현물이 부족해 사람의 고기를 먹는 실정이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 백성에게는 느슨한 처벌을 내리나 사회의 안정을 책임진 암반 및 보쇼쿠[bošokū, 領催] 등에게는 연좌제를 시행하기도 했다.<sup>38)</sup> 또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축의 도살을 금지하면서 각 동물의 경제적 유용함을 강조했으며, 가축이 경작지에 들어가 농작물을 해치는 것도 금지시켰다. 국가의 큰 연회에서만 크고 작은 소를 잡을 수 있었으며 버일러나 일반 백성은 제사 등에 양, 돼지, 닭, 거위, 오리 등의 가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sup>39)</sup>

반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했다. 말을 훔치거나 간음한 사람을 죽이고, 각종 마구를 훔친 사람에 대해 허리와 발꿈치를 자르며 혹은 입을 찢어버리기도 했다.<sup>40)</sup> 또 출정해서 전투를 치를 때 투항하거나 사로잡은 사람의 재물을 탐하지 말기를 요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집과 재산을 온전히 갖출 것을 원했다. 이를 어기면 죽도록 채찍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죄를 구사, 잘란, 니루의 어전에게 물을 것이라 공포하기도 했다.<sup>41)</sup>

과거처럼 약탈을 자행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더욱이 군사행동을 같이 한 몽골의 버일러가 한인을 약탈하자 후금의 법을 따라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모습도 보였다.<sup>42)</sup> 반면 새로 확보한 백성에게는 그들을 해

3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위의 책, 141~144쪽.

3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위의 책, 168~170쪽.

4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위의 책, 293~297쪽.

4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위의 책, 388~389쪽.

4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위의 책, 469쪽.

치는 존재를 흉타이지가 남긴 범문정 등의 암반에게 알리면 법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남기기도 했다.<sup>43)</sup>

흉타이지 시기 법은 후금 사회의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었다. 이는 천총 시기에 한의 권한이 강화되는 모습과 궤를 같이 한다. 법을 통한 민생의 안정과 극복, 전투에 참여한 자에게 개인적 약탈을 금지시키고 한이 재물을 분배하는 권한을 확보하는 모습 등은 崇德 시기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내부에 적용되었던 흉타이지의 법은 점차 퍼져나갔다. 몽골 세력을 규합하는 도중에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수차례 후금의 법과 도리를 지킬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몽골 각 세력의 경계를 지정 해주기도 했다. 동시에 그들과의 회맹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sup>44)</sup>

1634년 윤8월 립단 칸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아들과 부인이 투항하였으며 몽골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傳國璽와 마하칼라 불상도 흉타이지의 수중에 넘어오게 되었다.<sup>45)</sup> 이후 흉타이지는 두 기만 조직되어 있던 몽고의 기를 팔기로 확대 편제하고, 이후 몽골의 16구룬 49버일리의 추대로 몽골의 칸으로 즉위하는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다.<sup>46)</sup>

반면 조선은 아직 명과 굳건한 의리를 지키고 있었고, 이는 확장되는 후금의 법과 도리와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 IV. 법과 도리의 확장

누르하치와 흉타이지를 거쳐 만들어진 법과 도리는 후금 사회에 정착하였

4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위의 책, 634쪽.

44) 천총연간 몽골에 대한 법적 지배에 대한 내용은 이선애, 2016, 앞의 논문, 36~41쪽 참조.

45) 김호동, 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194~195쪽.

46) 노기식, 2004, 『명대 몽골과 만주의 교체』, 『사총』 59,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68~69쪽.

다. 특히 천총 시기를 지나며 거듭난 후금은 이웃한 몽골과 조선에 대해 그들의 도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sup>47)</sup> 사실 그들의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누르하치가 거병할 때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도리를 따른다고 주장했으며 거듭된 군사적 성공으로 이를 증명했다. 하나로 통합된 여진과 이웃한 일부 몽골 세력도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 시작했다.

명과 조선은 후금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명은 기존 질서의 지배자로 후금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고 영토를 잃었지만, 그보다 막대한 힘이 내지에 남아 있었다. 조선도 명과의 의리를 지켰다. 후금을 과거의 야만인 이상으로 보지 않는데다가 임진왜란이 남긴 再造之恩이란 명에 대한 부채가 남아있었던 조선이 그들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후금은 조선과의 관계를 과거처럼 유지할 생각은 없었다. 후금과 조선의 관계 변화는 그들이 주고받은 서신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sup>48)</sup> 임진왜란 시기 원병을 자처한 누르하치의 제안부터 홍타이지가 조선의 인조에게 내린 칙서에 이르기까지 각 서신은 그 시기의 정세를 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누르하치가 사르후 전투 직후 조선에 보낸 서신이다. 그 서신의 대략적인 내용은 명의 황제가 하늘의 법도를 어기고 있음을 비방하고, 사르후 전쟁의 결과를 지켜본 조선이 앞으로 명과 후금 중에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었다.<sup>49)</sup> 이에 조선은 국왕의 명이 아닌 평안도관찰사 박엽의 서신으로 응답했다. 또 이미 지나간 일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대의 때문에 명을 거역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웃 나라의 도리로 지낼 수는 있다고 대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후금의 서신이 도착한 이후 약 20일 동안 답신을 작

47) 다만 여기서 언급한 도리는 만주족의 정체성으로 대표되는 만주어의 사용, 질박한 생활 풍속, 활을 쏘고 말을 타는 행동 등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된 사례는 홍타이지에 의해 창조된 민족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이웃 국가에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와 이유가 없었다.

48) 입관 전 후금과 조선이 받은 서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張存武·葉泉宏, 2000, 『清入關前朝鮮往來國書彙編』, 國史館 참조.

4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역주회, 2014, 위의 책, 270~272쪽.

성하면서 그들에 대해 짐승 같은 자들이란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힘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왕 대신 변경의 관리를 통해 자극하지 않으려는 생각이었다.<sup>50)</sup> 누르하치도 조선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억류시킨 강홍립을 통해 자구의 의미를 탐문하나, 국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흘 뒤에야 서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sup>51)</sup>

이런 모습은 양국이 각자의 도리를 내세운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후금은 국서에서 큰 나라인 명이 작은 나라인 자신들을 꺾박해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시작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조선의 이전 왕조인 고려의 趙位寵과 金世宗[大定帝]의 사례를 들어 명과의 전쟁에 간여하지 말 것과 공정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sup>52)</sup> 하지만 조선은 후금의 설명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명에게는 父子, 후금에게는 交隣의 도리로 대할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누르하치가 죽고 홍타이지가 즉위한 이후 발생한 정묘호란은 양국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킨다. 아민이 이끈 후금의 군대는 강화도로 피신한 인조와 맹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양국의 도리를 논하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이 보내온 서찰에 적힌 명의 天啓와 후금의 天聰 두 연호를 두고 벌어진 대립이다.

후금의 사신으로 파견된 유흥조는 조선이 서찰에 사용한 天啓 연호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신들이 명에 속한 나라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오히려 조선에 기존 명의 연호를 버리고 후금의 연호인 天聰을 사용한다면 글자 하나만으로 두 나라의 믿음을 상징하는 표시가 될 것이라 제안하기도 했다.<sup>53)</sup> 조선은 이런 요구에 대해 綱常을 말할하려는 것이라 논의할 수 없다는 격렬한 반대의견에 직면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호를 사용하지

50) 『光海君日記』 권139, 11년 4월 9일(임술); 4월 11일(갑자); 4월 21일(갑술).

51) 이민환 지음, 중세사료강독회 옮김, 2014, 위의 책, 82~84쪽.

52) 1174년 고려의 조위충이 무신정권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이후, 다음 해인 1175년 慈悲嶺 서쪽과 압록강 동쪽의 40여 성으로 항복을 청했으나 금의 세종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金史』本紀 卷19 第7 世宗; 『高麗史』列傳 卷13 諸臣 趙位寵.

53) 『仁祖實錄』 권15, 5년 2월 21일(무오).

않는 명의 揭帖 형식을 빌려 국서를 보내는 것으로 타협하였다.<sup>5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금에 보낸 국서에는 명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sup>55)</sup>

하지만 후금은 인조의 동생 자격으로 심양에 파견된 원창군 이구와 수행하는 관원들의 송별연에서 예물을 내려주며 그들이 받은 蟒衣를 입고 홍타이지에게 답례로 고두할 것을 원했다. 원창군 일행은 조선에서는 국왕 이외에 망의를 입는 사례가 없다고 대답하며 도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후금의 관원들은 이들의 행동이 명을 두려워하고 양국이 체결한 형제의 맹약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냐며 협박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도리를 결국 관철시켰다.<sup>56)</sup> 동시에 인조에게 보내는 국서를 통해 앞으로 명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양국의 백성이 국경을 넘을 경우 즉시 조사해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sup>57)</sup>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모습은 본격적으로 후금의 법과 도리가 경계를 넘어 조선에 적용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국서에서 언급된 逃人은 만주어로 ‘ukanju’라 표기된 자들로 후금의 지배를 거부하고 각 기에서 이탈한 자들이었다. 이들이 경계를 넘어 도주를 시도하자 분쟁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쇠환 여부를 두고 갈등이 반복되었다.<sup>58)</sup>

홍타이지는 조선에 보낸 수차례 국서를 통해 이들의 쇠환을 망설이는 인조의 태도를 책망한다. 그리고 인조가 보내온 글이 변명뿐이라고 질책하면서 公道를 따라 도리에 굴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위협했다.<sup>59)</sup> 다른 서신

54) 『仁祖實錄』 권15, 5년 2월 22일(기미).

55) 『仁祖實錄』 권15, 5년 2월 23일(경신).

56) 『淸太宗實錄』 권3, 천충 원년 5월 3일(무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위의 책, 108~111쪽.

57) 『淸太宗實錄』 권3, 천충 원년 5월 5일(경오)의 기사에 ‘我國之滿洲漢人及陣獲朝鮮之人’으로 구체적 대상이 적시되어 있다.

58) 逃人 혹은 ukanju에 대한 최신의 연구는 그들이 국가 법률의 수정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 Meng Heng Lee, 2018, 『Ukanju and the Changing Political Order of Northeastern Asia in the 17th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3,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1626~1629년 후금을 이탈한 逃人에 대한 기록과 대응에 대해서는 加藤直人, 2007, 『逃人檔』, 東アジア文獻研究會의 일본어 번역을 참조.

에서도 1626년의 맹약 이후 자국을 명과 동일하게 대접하지 않는 모습에 불만을 표시하며, 조선이 부모의 나라로 여기는 명의 요구는 항상 들어주나 형제의 나라인 후금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sup>60)</sup> 이에 조선도 명이 요동과 심양의 땅을 잃기는 했지만 여전히 至尊이라고 반박하고, 오히려 병력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제의 국가를 꺾박한 후금의 태도를 비판하였다.<sup>61)</sup>

전쟁 이후 맹약을 통해 형제가 된 두 국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후금과 조선, 두 국가의 관계에 명이라는 삼자에 대한 태도가 결합되면서 양국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해당하는 도리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그 실체는 공허한 것이었다.

결국 양국의 대립은 1636년 홍타이지가 滿·漢·蒙의 황제로 즉위한 이후 발생한 병자호란을 통해 해소되었다. 양국의 관계는 형제에서 군신으로 조정되었고, 그 상징으로 인조는 삼전도에서 홍타이지에게 머리를 조아렸다.<sup>62)</sup> 나아가 조선의 소현세자는 심양에 인질로 억류되어 그의 의지와 상관 없이 홍타이지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어 각종 행사에 참가해야만 했다.

이제 모든 것은 청이 요구한 기준에 따라 해결되었다. 예를 들어, 청이 조선에서 자국의 영토를 침범해 삼을 채취한 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 바로 집행되었다. 또한 그들이 요구한 방식에 따라 조선에 출몰한 漢船을 나포해 장계를 올린 지방관을 의심해 직접 심문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속환을 위해 조선인이 지니고 다닌 담배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처벌을 꾸준히 요구한 점은 그들의 법이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sup>63)</sup>

59) 『仁祖實錄』 권27, 10년 9월 17일(임자).

60) 『仁祖實錄』 권28, 11년 6월 16일(병자).

61) 『仁祖實錄』 권32, 14년 6월 17일(경인).

62) 고두를 비롯한 만주족의 접견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김선민, 2018, 「접견례를 통해 본 아이신-다이칭 구루(A isin-Daicing Gurun) 세계」, 『한국사학사학보』 35 참조.

63) 병자호란 이후 청이 조선에게 요구한 내용의 분석은 김종수 외 역, 2008, 『昭顯濟陽日記』 해제, 『역주 심양일기』 1, 민속원, 20~24쪽 참조.

특히 한인 관료가 항복해 체발하고 흉타이지를 향해 고두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청의 도리를 확장, 전시하기 위한 이벤트였다. 1642년 5월 송산에서 패배한 명의 관원들이 심양의 궁전에서 고두하는 항복의식을 치르기 이전 조선의 세자에게 반드시 참석할 것을 지시하고, 그 현장에 참석한 소현세자에게 황제가 직접 소감을 물어본 행위는 명을 대신하는 청의 권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흉타이지의 의도가 담긴 행동은 아니었을까?<sup>64)</sup>

이후 청에 투항한 한인 관료들은 조선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sup>65)</sup> 그들은 과거 조선이 명에 보여준 사대의 방식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인 관료는 조선이 청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예를 행하는지 감시하였고, 미진한 경우에는 요구되는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sup>66)</sup>

일련의 과정은 요동에서 명이라는 힘이 물러난 이후 청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웃 국가인 조선과 몽골은 질서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법과 도리를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변화하기 시작한 17세기의 모습 중 하나였으며,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힘의 변동이 각 국가에 미친 영향이기도 했다.

## V. 맺음말

흉타이지가 죽은 후 1년 뒤 새로운 황제는 심양을 떠나 자금성의 궁전으로 향했다. 송정제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면서 명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는 사라져버렸다. 그 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또 다른 경쟁자인 이자성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청은 동아시아 질서의 주도자로 떠올랐다.

64) 소현세자 시강원 지음, 정하영 외 역, 2008, 『심양장계』, 창비, 704~706쪽.

65) 17세기 명청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貳臣과 그로 인한 조선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한명기, 2005, 『17세기 초·중반 朝淸關係와 貳臣』, 『동북아역사논총』 8,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66) 청의 입관을 전후해 洪承疇를 비롯한 한인 관료들이 조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孝宗實錄』 권6, 2월 21일(무진)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인 내세운 질서의 근원은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기 구축된 것이었다. 특히 天命과 天聰 시기를 거쳐 정립되고 확장된 법과 도리는 崇德 시기를 통해 몽골과 조선 등의 이웃 나라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후금의 한은 자신을 따르는 몽골 세력의 경계를 지정해주고 회맹을 통해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조선도 두 차례의 전쟁으로 자신들의 세력권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누르하치의 군사적 성공을 기초로 통합된 여진인은 道理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해, 홍타이지는 만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창출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르렀다. 그리고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모두 法이라는 수단을 한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여진의 최고 지도자는 이전보다 굳건해진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내부의 반발을 무마시킬 힘을 얻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홍타이지에게 협력한 한인 관료들은 명에서 만들어진 『대명회전』 및 법과 관련된 제도 등을 참고해 청의 실정에 맞는 사법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이들의 제안은 무조건 실행된 것은 아니며 홍타이지의 결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홍승주를 비롯한 명의 고위 관료가 항복의 표시로 체발하고 후금의 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은 조선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청의 질서를 나타내는 선전물로 이용되었다. 이런 모습은 17세기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힘의 변화에 따라 국제 질서가 명에서 청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했다.

## 참고문헌

『滿洲實錄』 『舊滿洲檔』 『滿文老檔』 『淸實錄』 『內國史院檔』 『朝鮮王朝實錄』

Meng Heng Lee, 2018, “Ukanju and the Changing Political Order of Northeastern Asia in the 17th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3

김선민, 2018, 「접견례를 통해 본 아이신-다이칭 구문(A isin-Daicing Gurun) 세계」, 『한국사학사학보』 35

李蓮香, 1965, 『阿敏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미령, 2008, 「天聰年間(1627-1636年) 支配體制의 確立科程과 朝鮮政策」, 『중국사연구』 54

이선애, 2016, 「청대 몽골법 제정과 적용 양상」, 『명청사연구』 46

\_\_\_\_\_, 2018, 「후금 시기 의례의 정치」, 『사총』 93

한명기, 2005, 「17세기 초·중반 朝淸關係와 貳臣」, 『동북아역사논총』 8

加藤直人, 2007, 『逃人檔』, 東アジア文獻研究會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연구회, 2014, 『만주실록 역주』, 소명출판

구범진, 2012,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김종수 외 역, 2008, 『昭顯瀋陽日記』 해제』, 『역주 심양일기』 1, 민속원

戴逸 지음, 김승일 옮김, 2017, 『한권으로 읽는 청나라역사』 상, 경지출판사

遼寧大學歷史系, 1980, 『天聰朝臣工奏議』

소현세자 시강원 지음, 정하영 외 역, 2008, 『심양장계』, 창비

신충일 원저, 신해진 역주, 2017, 『건주기정도기』, 보고서

유소맹 지음, 이훈·이선애·김선민 옮김, 2013,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이민환 지음, 중세사료강독회 옮김, 2014, 『책중일록』, 서해문집

陳捷先, 2010, 『努爾哈赤詞典』, 紫禁城出版社

滋賀秀三, 1993, 『中國法制史』, 東京大學出版會

張存武·葉泉宏, 2000, 『淸入關前朝鮮往來國書彙編』, 國史館

장진편 주편, 한기종·김선주 외 옮김, 2006, 『중국법제사』, 소나무

曾憲義·馬小紅 주필, 채복숙·전영매 외 역, 2015, 『예와 법』, 경지출판사

總主編, 2003, 『中國法制史考證』, 中國社會科學出版

최동권, 2007, 『구만주당』, 보고서

韓世明, 2006, 『明代女真家族形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Abstract ■

## Qing's Law and Duty in Early Qing Period and Joseon

Chong, Byung J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how Nurhaci and Hongtaiji, monarchs of Jurchen, used law and duty to justify their rule in the early and middle 17th century. It also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role that the Chinese officials played in the process and describes how the law and duty of Later Jin spread across the boundaries, illustrated in the case of Joseon, a neighboring country.

Nurhaci united the divided Jurchens and tried to institute strict law enforcement. He maintained and consolidated his power through punishment and demanded father-son duty ties of those who he failed to subjugate legislatively. In his turn, Hongtaiji subdued his rivals by means of the law after his enthronement. The laws he protracted aimed at removing political rivals, while also bringing stability to the state. The Chinese officials who served Later Jin recommended using the Ming justice system, and when Hong Taiji adopted it the law became stricter.

The law and duty enforced inside Later Jin gradually spread until they crossed the border with Joseon. Later Jin and Joseon began to discuss the duty for the two states through epistolary correspondence but failed to reach consensus. In the end,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determined through the war, while the Chinese officials of Later Jin were used as tools for managing the new order.

Key words : law, duty, Nurhaci, Hongtaiji, Chinese official, Joseon-Qing relations